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9.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4. 11. 18.

다. 상정일자: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4. 11. 2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보행행정과장 이임수】

### 가. 제안이유

보도확장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도로(차량진입로·출입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 1(제3조 관련) 점용물 산정기준 항목 신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가목(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에 따른 공사로 인

하여 도로점용허가(변경 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출입로” 항목 신설

○ 해당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 하향 조정

- 해당 점용물의 산정 요율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

다. 참고사항

- 「도로법」 제66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입법예고 : 2024. 10. 10. ~ 10. 30. 결과: 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17년 서울시 만리재로 보행로 확장공사’로 인해 점용료 부담 증대, 향후 ‘2024년 끼리끼리거리(3길) 다중인파 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공사’ 및 ‘2024년 레드로드 안심거리 조성공사’로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도확장 등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늘어난 도로(차량진입로·출입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요율)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항목 신설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가목(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에 따른 공사로 인

하여 도로점용허가(변경 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출입로” 항목 신설

□ 해당 점용료 산정기준 요율 하향 조정

- 해당 점용물의 산정 기준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료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료 (단위: 원)
<b>&lt;신 설&gt;</b>					1. 영 별표 3 제 3 호 에서 정한 점용 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가목(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 허가(변경 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출입로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 향후 계획

○ 도로점용료(차량진출입로) 관련 市조례 개정 추진 (區 → 市)

- 市 도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 요구
- 서울특별시장의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규정함.(市 조례 제1조)

○ 개정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면

신설된 제2조 제5호는 차도 축소 및 보도 확대를 위한 공사에 따른 차량 진입로·출입로의 추가 점용허가 필요성을 반영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공사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점용허가 시 적용되는 면적(늘어난 면적에 한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제5조와 제6조의 법령 표기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일관성을 확보함.

또한, 법령 인용 오류는 행정 집행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이를 정정한 것은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됨.

#### ○ 기대효과

추가 점용허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관련 업무 처리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점용료 부과 면적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 집행 및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령 인용 오류 수정으로 조례의 법적 완결성을 확보하여 실무 담당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의 체계 정비를 통해 행정 처리 신뢰도 향상과 보행 환경 개선 공사의 행정 지원을 통해 보행권 확대와 주민 생활 편의 증대, 공익적 목적을 위한 도로 점용 허가의 유연성 확보가 될 것으로 판단됨.

####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제도적 명확성을 높이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조례 간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만리재로 보행로 확장공사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 요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점용허가와 관련된 세부 지침 마련과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며, 개정 조례 시행 초기 단계에서 주민 홍보와 실무 지침 배포를 통해 혼선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 [별표 1] 관계 법령

### 「도로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2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 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